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 박해철 · 서영석 · 박수현

전현희 · 김주영 · 이병진

전진숙 • 고민정 • 박희승

복기왕 · 김태년 · 손명수

김용만 • 박홍배 • 조 국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 (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기간 중 최초 5일"을 "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를 "경우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 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혅 개 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 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시 제18조에 따라 피보 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 ·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또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 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 난임치료휴가-----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 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다.

- 1. (생략)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 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u>기간 중 최초 5일</u>.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u>경우에</u> 한정한다.

<신 설>

②・③ (생략)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 저 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 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요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1. (현행과 같음)
2
기간
경우로
 .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
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다만, 피보
<u>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u>
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
<u>다.</u>
②·③ (현행과 같음)
데77조(준용) ①
유산
·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